

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631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백정미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 C, D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6. 1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17. 접수 제53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E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B, C, D과 소외 F 사이에 체결된 2019. 6. 13.자 증여계약은 각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각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판결금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 B와 F 부부 사이이며, 피고 C, D은 피고 B와 F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851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피고(F)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17. 2. 27. 피고 E과 이 사건 부동산¹⁾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 대금 지급일을 2017. 3. 7.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7. 3. 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E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2019.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들 합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F이 피고 E에게 지급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F의 가족인 피고 B, C, D 앞으로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주위적 청구원인).

만약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F이 피고 B, C, D에게 각 증여하고 이를 다시 위 피고들이 피고 E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F과 피고 B, C,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원인).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B, C, D에게 각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전액 충당되었고, 위 대출금의 채무자는 F이 아니라 피고 B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채무자 F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식

1)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8. 9. 20. 분할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각 분할된 부동산이다.